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318

발의연월일: 2023. 11. 9.

발 의 자 : 아수잔삐・김성환・김승남

김영호 • 류호정 • 박홍근

송옥주 • 양이원영 • 우원식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하 "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보장하고, 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위촉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지방탄소중립위원회"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지방탄소중립위원

회의 위원 위촉의 경우에도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 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제2기 탄소중립위원 회가 출범했지만,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등 법률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계층의 참여가 배제되며 민주적 참여 원칙 을 위반한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이 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심 의・의결하며 이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기본법」이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위원회 등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국가적 비 전으로서 그 과정에서의 부담과 피해가 일부 계층에 전가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함께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가치라고 할 것임.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함을 더욱 명확히 하고실질적인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민주적 참여를 통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고자 함(안 제15조제5항 등).

법률 제 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 중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제22조제3항 후단 중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동조합
 -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 체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		
원회의 설치) ① ~ ④ (생	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		
략)	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⑤		
위촉할 때에는 <u>아동, 청년, 여</u>			
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	호에 해당하는 단체로부터 후		
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	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		
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	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u><신 설></u>	1. 아동・청년・여성을 각각 대		
	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u><신 설></u>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		
	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		
	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		
	<u>동조합</u>		
<u><신 설></u>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		

<신 설>

<신 설>

- ⑥ ~ ⑨ (생 략)
-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② (생 략)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u>아동, 청년, 여성, 노동</u> 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 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신 설>

- <u>촌</u>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_____
- -----<u>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u> 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아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여야----.

1. 아동ㆍ청년ㆍ여성을 각각 대

표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신 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 연합단체, 전국적 규모의 산 업별 연합단체 및 산업별 노 동조합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신 설>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신 설>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소상공인기 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 인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 춘 전국적 규모의 단체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신 설>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